

전라남도
도 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5-55호

2015년 11월 16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2호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3호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5호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6호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7호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8호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69호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70호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71호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72호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73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군행정

담양군 공고 제2015-890호	공사완료(정정) 공고
담양군 공고 제2015-895호	공사완료 공고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2호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라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3호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이하 "올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터"란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송용 녹화촬영,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올림터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조례 제7조 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올림터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올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예술 진흥, 문화예술 발표 및 공연
2.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과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3. 전라남도립국악단 공연 활동 지원
4.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올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올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입장 제한)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운영위탁) ① 올림터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올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올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올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올림터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올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올림터의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제9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탁 심사를 위하여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 의원
3.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협약 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제·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및 위탁·수탁 협약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올림터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운영경비는 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정산하여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올림터의 시설과 재산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올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라남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예산의 지원 시 1회 송금액은 수탁자 예산집행 계약서의 3월분 운영비로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올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입금 등의 처리)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도비 지원금 등 수입금을 올림터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등 사용)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올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나 수탁자가 올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사용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용자는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올림터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나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연습실, 부속 시설 사용료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올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설비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올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3조(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고지한다.

③ 전라남도립국악단 관람료는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제24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당 총 관람 좌석수의 110퍼센트 이내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지 제7호의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

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올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도소리올림터 시설 사용료

(제19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 위	사 용 료	비고
공연장	오전 (09:00~12:00)	90,000	
	오후 (13:00~17:00)	110,000	
	야간 (18:00~22:00)	130,000	
참고사항	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차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 함 4.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 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초과 ~ 1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30퍼센트 • 1시간 초과 ~ 2시간 이내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부속설비		기준	사용료	비고
악 기	그랜드피아노(외산)	1회	10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그랜드피아노(국산)	1회	3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70,000	연습기간 포함 1회 공연당 사용료__
	보면대	1회	30,000	
	샤 막	1회	30,000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무용장판	1회	50,000	
냉방	공연장	1시간	6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난방	공연장	1시간	80,000	
조명/효과	무대조명	1회	60,000	- 무대조명 : 공연연습 또는 행사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드라이아이스기	1회	50,000	
	스모그기기	1회	20,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	20,000	3개 기본 1개 추가 시 마다 5,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회	10,000	1채널 기준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공연연습 또는 행사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음향반사판	1회	30,000	공연연습 또는 행사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녹화/녹음	1회	30,000	- 카세트테이프 1,000원 - 테이프 CD 등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1회	200,000	
발권	발권기	1매	150	
기타	분장실	1회	50,000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1회	4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녹화)	1회	30,000	중계료 및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라 디 오	1회	20,000	
의상 및 대소 도구		1회	취득가액의 5%	
병풍		1회	50,000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남도소리올림터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핸드폰)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료 감면 대상 여부	· 국가 또는 도 주최 행사() - 100% 감면 · 도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 50% 감면 · 도 단위 이상 사단법인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행사() - 50% 감면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용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 분 (일 회) 마침 : 년 월 일 시 분		
행사명 및 주요내용				
관람료		일반 : 원 학생 : 원 할인 : 원 단체 : 원 기타 : 원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전라남도「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도소리올림터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또는 수탁기관장)				

※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부속시설: 무대조명, 무대, 악기, 음향시설, 녹화·중계방송, 라디오중계(녹음), 냉난방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남도소리올림터 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행 사 명						
행사내용						
사용 시설명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부터 (일 회 시간) 마침: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이 면 참 조					
기타사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도소리올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인 (또는 수탁기관장)						

]

(뒷면)

허가조건

1.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남도소리올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남도소리올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남도소리올림터 시설 사용허가대장
(제17조제4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

남도소리올림터 시설사용 취소신청서				
신청자	주 소			
	직업 또는 단 체 명		전화번호 (핸드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허가 취소 사항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취소 사유				
전라남도「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도소리올림터 시설사용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또는 수탁기관장)				

[별지 제6호 서식]

검 인 신 청 서

- 1. 행 사 명 :
- 2. 주 최 :
- 3. 행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회)
- 4. 예 매 처 :
- 5. 연 락 처 :
- 6. 검인신청내역 :

관람권 / 구 분	검 인 신 청		비 고
	매 수	금 액	
원권			
원권			
원권			
원권			
권			
계			

전라남도 「남도소리올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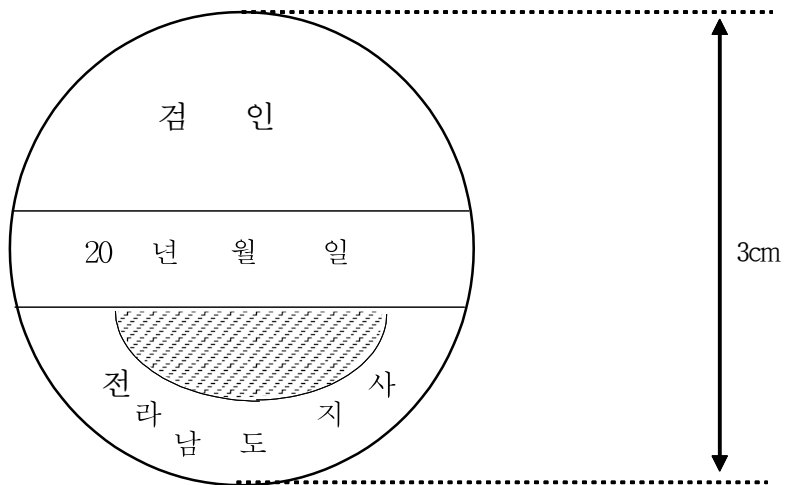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또는 수탁기관장)

[별지 제7호 서식]

검 인 인 영
(제24조제2항 관련)



※ 수탁받은 경우 ‘전라남도지사’ 대신 ‘수탁기관장’ 표기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29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5호

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청회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장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

제5조(인가·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협의회장 소속의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사업 총괄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전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지역개발업무와 관련된 국장, 농지·환경·산림·문화·관광 업무와 관련된 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2. 위촉직 위원 : 국토계획·도시·건축·교통·관광·과학기술·금융·환경, 국방·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임기)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①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현지 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전라남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영 제49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농지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단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허가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가·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및 특별회계

제24조(우선지원 대상)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지원하는 항목에 관한 지원 비율 등 구체적인 항목은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6호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천 요청)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면 통보)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7호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같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전라남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8호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스포츠 마케팅 지원”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 계획과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를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이나 특정 선수와 팀, 그리고 국내·외 대회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유치·후원·지원하여 그에 따른 지역과 체육시설의 이미지나 가치를 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전라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체육발전과 스포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계획(이하 “체육진흥 및 마케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마케팅계획”을 “체육진흥 및 마케팅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마케팅계획”을 “체육진흥 및 마케팅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라남도 체육진흥 계획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운영 계획

4.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각종대회 유치현황
5.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각종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6. 그 밖의 체육진흥 및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체육진흥 및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후원·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목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도의 스포츠 마케팅업무”를 “도의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업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당연직 : 도의 스포츠 마케팅업무 관련 과장”을 “당연직 위원 : 도의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위촉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으로 하며, “2명”을 “7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스포츠마케팅 업무관련 담당”을 “체육진흥 또는 스포츠 마케팅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69호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

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 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인교육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학교,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법 제26조의2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전통시장 등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상인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70호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에 따라 100분의5”를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5조 중 “부과한 날부터 30일”을 “부과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71호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영 제2조제3호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옥외 체육공간의 조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장식조명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장식조명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민 및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는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빛공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72호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연합회장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보조) 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예산의 반영) 도지사는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검사결과 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10. 26.)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11. 16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73호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본문을 삭제하며,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1억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1억원 이하”로 하고, 나목 중 “일반 시 지역”을 “동 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로 하고, 다목 중 “군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를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지사·유기농·햅쌀(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도 특산품 또는 도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익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8항” 을 “제13조제9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를 “ 제20조의2 및 제25조의2에 따른” 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100분의 10 이상” 을 “100분의 5 이상”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토지매입비” 를 “인건비, 토지매입비” 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같은 호 “법률 제 7698호, 2005.11.8.” 을 “법률 제12649호, 2014.5.21.”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공고 제2015-890호

공사완료(정정) 공고

담양군 공고 제2015-882호와 관련,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명: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샹브로도트】1블럭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완료하고 이를 정정(준공면적 수정) 공고 합니다.

2015. 11. 16

담양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담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나. 명 칭 :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2단계)
3.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6,340.9㎡(샹브르도트 1블럭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블럭	면적(㎡)	준공여부	비고
메타프로방스	1블럭	11,338.7	기완료	2014.7.10
	2블럭	2,422		
	3블럭	5,980.4	기완료	2015.2.26
	4블럭	5,086		
	5블럭	909		
	6블럭	2,872		
	7블럭	7,443		
	8블럭	3,309		
	9블럭	12,368		
	10블럭	5,225		
	11블럭	1,470		
	12블럭	5,811		
	13블럭	1,470		
	14블럭	2,343		
	15블럭	43,621		

사업시행자	블럭	면적(m ²)	준공여부	비고
메타포토리아	1블럭	3,954		
	2블럭	6,902		
상브르도트	1블럭	6,403	금회완료	• 당초- 6,350.9 (지적확정측량면적) • 변경-6,340.9 (지적확정측량면적)
	2블럭	713		
	3블럭	3,593		
	4블럭	1,709		

4.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법인명칭 : (유)상브르도트

나.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39-7

다. 대표자성명 : 백민곤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13. 03. 20

나. 준공일 : 2015. 11. 04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7. 기타문의 :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061-380-3100)

담양군 공고 제2015-895호

공사완료 공고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명: 담양 메타프로방스조성사업-메타프로방스】 5블럭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완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11. 16

담양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담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나. 명 칭 :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2단계)
3.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888.6㎡(메타프로방스 5블럭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블럭	면적(㎡)	준공여부	비고
메타프로방스	1블럭	11,338.7	기완료	2014.7.10
	2블럭	2,422		
	3블럭	5,980.4	기완료	2015.2.26
	4블럭	5,086		
	5블럭	909	금회완료	888.6 (지적확정측량면적)
	6블럭	2,872		
	7블럭	7,443		
	8블럭	3,309		
	9블럭	12,368		
	10블럭	5,225		
	11블럭	1,470		
	12블럭	5,811		
	13블럭	1,470		
	14블럭	2,343		
	15블럭	43,621		
메타포토리아	1블럭	3,954		
	2블럭	6,902		
상브르도트	1블럭	6,340.9	기완료	2015.11.12
	2블럭	713		
	3블럭	3,593		
	4블럭	1,709		

4.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법인명칭 : (유)디자인프로방스

나.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

다. 대표자성명 : 김승경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13. 03. 20

나. 준공일 : 2015. 11. 09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7. 기타문의 :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061-380-3100)